

임실군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실군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임실군의회 의장



2023년 8월 9일

임실군의회 규칙 제32호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
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